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국제문화행사의 범위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한정하는 등 목적 및 정의 조항을 수정하고,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개별 법률의 감면 조항에 따라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위원회의 수행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수정주요내용

- 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국제문화행사’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한정함(안 제1조).
- 나. 국제문화행사의 요건 중 문화적 파급효과 및 문화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다. 조직위원회의 수행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7조제1항).
- 라. 국제문화행사 후원·투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부담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6조 삭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국제문화행사”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로 한다.

안 제2조제1호가목 중 “국제기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크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크고 국가적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및 임대료 감면”을 “시설 또는 공간 제공”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중 “구성”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로, “구성·운영”을 “설립”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국민 참여 및 국제문화행사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4.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10조의 제목 중 “활성화 등”을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중 “국유·공유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국유·공유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안 제14조 본문 중 “조직위원회 등 정당한 승인권자”를 “조직위원회”로 한다.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안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안 부칙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제문화행사</u> 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u>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문화행사”란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u>국제기구</u>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나. (생 략) 다. 국제적으로 문화적 파급효과가 <u>크다고 인정되는</u>	제2조(정의) ----- -----. 1. ----- ----- ----- ----- -----. 가. <u>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u> ----- ----- ----- ----- 나. (원안과 같음) 다. ----- ----- <u>크고 국가적 위상제</u>

<u>행사</u>	<u>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u>
<u>라. 국가적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u>	<u><삭 제></u>
2. (생략)	2. (원안과 같음)
제6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① ----- ----- ----- -----.
1.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및 임대료 감면	1. ----- <u>시설 또는 공간 제공</u>
2. ~ 7. (생략)	2. ~ 7. (원안과 같음)
② (생략)	② (원안과 같음)
제7조(조직위원회 구성 등) ①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직위원회 설립 등) ① ----- ----- ----- <u>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u> -----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0조(민간 참여 활성화 등) ① (생 략)

② 국가는 국제문화행사에 대하여 후원, 투자, 협찬 또는 지원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립-----.

1.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2.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시행

3. 국민 참여 및 국제문화행사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4.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안과 같음)

제10조(민간 참여 활성화) (원안 제1항과 같음)

<삭 제>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문화행사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

-----국유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국제문화행사 휘장 등의 사용) -----

-----조직위원

위원회 등 정당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
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
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3.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
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6. 「수도법」 및 「하수도법」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8.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회-----, -----

 -----.

<삭 제>

<u>조성비</u> <u>제17조</u>(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생략) <u>제18조</u>(권한의 위임) (생략) <u>제19조</u>(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략) <u>제20조</u>(과태료) ① 제14조 또는 <u>제19조</u>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1년</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16조</u>(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원안 제17조와 같음) <u>제17조</u>(권한의 위임) (원안 제18조와 같음) <u>제18조</u>(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원안 제19조와 같음) <u>제19조</u>(과태료) ① ----- <u>제18조</u>----- ----- -. ② (원안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09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임오경 · 박수현 · 이기현
양문석 · 한민수 · 민병덕
서영교 · 조계원 · 한정애
윤후덕 · 임미애 · 차지호
서미화 · 위성곤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국가적 문화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문화행사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격 상승과 더불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자산으로의 기능 및 관광·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과거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 행사는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경기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내의 국제적 문화행사 기획·유치가 증가하고 있

음.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시행되어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국제문화행사’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한정함(안 제1조).

나. 국제문화행사의 요건 중 문화적 파급효과 및 문화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다. 조직위원회의 수행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7조제1항).

라. 국제문화행사 후원·투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부담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6조 삭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문화행사”란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나. 외국인 참가자의 비율이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행사

다. 국제적으로 문화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적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

2.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이란 국제문화행사에 사용되는 행사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행사장에 부대되는 편의

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사의 총괄·조정 및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2. 교통·통신·전력·용수·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

3.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4.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
5.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6.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7.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그 밖에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직위원회 설립 등) ①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국민 참여 및 국제문화행사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4.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참여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장사업
2. 기념주화 등 기념품의 판매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국제문화행사 회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회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념주화의 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6조(국제문화행사 지원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행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4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